■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69-201.
http://doi.org/10.17948/kcs.2026..112.169

고종 초기 왕실 가례의 절차와 성격
—병인년[1866]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장혜지(張蕙志)*

목 차

1. 머리말
2. 병인년[1866] 『왕비가례등록』의 편찬과 구성
3. 병인년[1866] 왕비 가례의 절차와 특징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866년(고종 3)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당시 편찬된 예조 편과 사옹원 편의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등록의 편찬과 구성 및 왕비 가례의 절차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1866년 『왕비가례등록』은 현재 확인되는 왕비 가례 관련 등록 가운데 예조 편과 사옹원 편이 함께 전하는 유일한 사례로, 동일한 가례를 서로 다른 관청에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두 등록의 편찬 주체와 수록 내용을 비교하여 각 등록의 성격을 검토하고, 삼간택부터 육례와 조현례에 이르는 왕비 가례의 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예조 편은 의주와 전교, 계사 등을 중심으로 의례의 절차와 격식을 기록한 반면, 사옹원 편은 동뢰연과 조현례의 찬품, 물종, 배설도 등 가례의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사옹원 편은 찬품의 조달과 제조에 필요한 물종과 수량, 배설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존 전례에 따른 가례 시행 과정에서 사옹원이 담당한 실무를 별도로 기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1866년 가례는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위상, 신정왕후의 철렴,

* 경기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운현궁의 별궁 활용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났으나, 삼간택과 육례, 조현례에 이르는 절차는 기존 왕실 전례에 따라 거행되었다. 이를 통해 1866년 『왕비가례등록』은 고종 초기 왕실 가례의 운영 양상과 예조 및 사옹원의 역할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이며, 조선 후기 왕실 가례의 전통성과 연속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을 밝혔다.

주제어: 『왕비가례등록』, 예조, 사옹원. 왕실 가례, 명성황후

1. 머리말

조선 왕조는 五禮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성리학적 질서 기반의 체제를 구비하고자 하였다. 왕실에서 행해졌던 오례 중 嘉禮는 왕비・왕세자・왕세자빈의 책봉, 왕세자・왕세손의 관례, 왕과 왕세자의 혼례, 연향례, 축하례 등의 의례를 말한다. 왕실 가례는 家禮의 관례・혼례와 일정 부분 공통된 형식을 지니면서도, 책례・관례・혼례 등의 거행 과정에서는 왕실의 위계와 권위를 반영하여 사대부층의 의례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세자의 배우자를 간택할 때는 금혼령을 내리는 등 왕실의 품위와 사대부들과의 等差를 의식에서 구현하였다.[1] 가례 중 혼례, 국혼 의식은 국왕 그 자신과 直系親인 자녀・자손의 배우자를 왕족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며,[2] 나아가 종묘와 사직을 보전할 후계자를 생산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3]

대체로 조선 왕실의 혼례 의식은 납채・납징・고기・책봉・친영・동뢰연의 六禮로 거행되었다. 이 육례를 중심으로 왕실 혼례가 연구되었다. 그 중 혼례를 기록한 의궤와 등록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태조부터 숙종대까지의 의례를 『가례도감의궤』 및 『가례등록』 등을 중심으로 의례 구조 상 내적 차원의 변화와 장기지속적 측면에서 의례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했다.[4] 조선 초기 왕실

1) 이범직,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1990, 47면.
2) 박미선, 『조선시대 국혼의례 연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면.
3) 백주연, 「조선 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20면.
4) 박미선, 앞의 논문, 2015.

혼례 제정 및 정비 과정을 사상적·정치적 측면에서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5] 조선 초기까지 시행되었던 男歸女家婚이 조선 중종대 이후 친영례로 변모하여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6] 또한 가례의 절차와 규범에 대해 궁궐과 별궁, 妃의 본가 등 공간에 주목하여 시공간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며, 『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친영과 조현·묘현 의절을 규명하고자 한 것도 있다.[7] 이외에 국혼에 따른 외척 가문의 위상 및 정국 운영 양상의 변화[8], 사례별 혼례의 절차와 의미 등을 정리한 연구[9], 가례 반차를 중심으로 국왕 행행의 진행과정과 의례상의 의미 및 변화를 살펴본 연구[10]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866년(고종 3)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와 이를 기록한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11] 1866년 혼례는 왕조 체제에서 국왕을 주체로 거행된 마지막 왕비 가례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왕실 가례의 운영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주목한 사료는 1866년 가례 당시 작성된 『왕비가례등록』이다. 이 등록은 예조 편, 사

---

5) 백주연, 「조선 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6) 한만영, 「中宗代의 親迎論爭과 朝鮮中期 婚禮制度의 變化」, 『역사문화연구』 12, 2000;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별궁친영례(別宮親迎禮)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7) 임민혁, 「조선시대 국왕 가례의 절차와 규범」, 『동양고전연구』 47, 2012;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한국사학보』 25, 2012.

8) 임혜련,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한국사학보』 57, 2014; 「1671년(顯宗 12) 肅宗妃 仁敬王后의 國婚과 光山 金門 家勢」, 『역사와 담론』 71, 2014; 「헌종비(憲宗妃) 효정왕후(孝定王后)의 국혼(國婚)과 남양(南陽) 홍씨(洪氏)의 역할」, 『사림』 62, 2017.

9)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 – 숙종·인현왕후 嘉禮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 2007; 안애영, 「1882(壬子)년 왕세자 가례 연구: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볼긔」를 중심으로」, 『장서각』 22, 2009; 이욱, 「조선후기 후궁 가례의 절차와 변천: 경빈 김씨 가례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2008; 이욱,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1882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8, 2016. 이상의 가례 연구 현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으로는 박미선, 「조선시대 嘉禮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 144, 2021 참조.

10) 이왕무, 「1802년 순조의 嘉禮에 나타난 국왕의 幸行 연구」, 『장서각』 14, 2005; 「1906년 순종의 嘉禮班次 연구」, 『장서각』 25, 2011.

11) 당시의 혼례에 관한 선행 연구로 정치사적 관점에서 고종의 親父인 흥선대원군이 의식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음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김세은, 「1866년 고종의 嘉禮와 대원군의 위상 강화」, 『한국사연구』 136, 2007) 이외 국왕이 대왕대비를 모시고 행차하였던 점, 1866년 가례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어 운현궁이라는 공간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이민아, 「흥선대원군 집권기 운현궁의 성격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12, 2025.)

옹원 편 총 2권이 있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소장 중이다. 1866년 편찬된 가례등록은 다른 가례등록과 달리 실무를 담당한 사옹원과 의례를 주관한 예조에서 각각 편찬한 것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나, 현재까지 이 2편의 등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1866년의 『왕비가례등록』은 1월부터 3월까지, 즉 금혼령부터 조현례까지 가례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 및 내용 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었다.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는 왕조체제에서 마지막으로 거행된 왕비 혼례로, 조선 왕실 혼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변화 양상을 파악·정리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혼례는 대왕대비의 철렴, 대원군의 섭정, 正宮의 중건 등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던 시기에도 왕실 의례의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조선 왕조 500여 년 혼례사 연구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예조와 사옹원에서 각각 작성한 『왕비가례등록』에 대한 체계적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예조와 사옹원이라는 서로 다른 관청에서 편찬한 등록의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66년 왕실 혼례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한편 동일한 가례에 대해서는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도 현존하지만, 본고에서는 예조와 사옹원이라는 서로 다른 관청에서 각각 작성한 두 『왕비가례등록』이 함께 전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두 등록은 동일한 가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편찬 관청의 소관 업무에 따라 수록 내용과 기록의 중점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통해 각 관청에서 가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고는 먼저 1866년 『왕비가례등록』의 예조 편과 사옹원 편의 편찬 및 구성 내용을 비교하여 각 작성 주체의 의례적·실무적 성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1866년 왕비가례 절차의 의례적 거행을 시계열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고종 초기의 가례가 왕실의 전례 및 관례에 따라 육례의 구도로 진행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실 의례의 전형 및 양상이 19세기 말까지 그 전통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2. 병인년[1866] 『왕비가례등록』의 편찬과 구성

조선시대의 가례등록은 의궤청에서 제작한 의궤와 달리, 의례의 주관 관청인 예조와 그 속사인 계제사 등에서 담당한 업무의 관련 문서들을 종합 정리해 재편찬한 기록물이다.[12] 국왕과 왕비의 가례를 정리한 『왕비가례등록』은 현재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총 8권이 전해지며, 그 서지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비가례등록 소장 현황[13]

연번	자료명	가례주체	편찬연도	편찬기관	청구기호	책수
1	壯烈王妃嘉禮稽制司謄錄	장렬왕후	1638	계제사	K2-2706	1
2	王妃嘉禮謄錄	인현왕후	1681	계제사	K2-2667	1
3	王妃嘉禮謄錄	인원왕후	1702	예조	K2-2668	1
4	王妃嘉禮謄錄	정순왕후	1759	예조	K2-2669	1
5	王妃嘉禮謄錄	효정왕후	1844	예조	K2-2670	1
6	王妃嘉禮謄錄	철인왕후	1852	예조	K2-2671	1
7	王妃嘉禮謄錄	명성황후	1866	사옹원*	K2-2672*	1
8	王妃嘉禮謄錄	명성황후	1866	예조*	K2-2673*	1

〈표 1〉에서 8권의 『왕비가례등록』은 인조대 장렬왕후 사례부터 고종대 명성황후 사례에 이르기까지 육례로써 거행한 혼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1802년(순조 2) 거행된 순원왕후의 가례등록은 파악되지 않는다.

등록은 의궤와 같이 座目・傳敎・移文・禮關・甘結・米布式・賞典 등의 명확한 목차 편제 없이 전교와 계사 및 각종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일지 형식이다. 따라서 등록은 가례의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등록은 편찬기관의 소관 업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해당 기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명성황후의 『왕비가례등록』은 2책으로 각각 예조와 사옹원이 편찬하였다. 사옹원은 왕의 식사 및 궁중 음식 공급, 궁중 내 연회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곳으

12) 임민혁,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한국사학보』 25, 2012, 109면.
13) 현재 장서각 사이트에서는 K2-2672를 예조 편으로, K2-2673을 사옹원 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첨부되어 있는 사료 원본 파일을 확인했을 때는 K2-2672가 사옹원 편, K2-2673이 예조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수록되어 있는 자료 설명에도 혼동이 있으며, 특히 K2-2672에 대해 장서각 해제에서는 예조 편으로, 장서각자료센터 해제에서는 사옹원 편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동뢰연 찬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 다른 등록과의 차별성이다.[14]

〈표 1〉에서 현재 확인되는 왕비 가례 관련 등록 가운데 사옹원이 편찬한 사례는 명성황후 가례가 유일하다. 사옹원이 이전 왕비 가례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1866년 사옹원 편의 특징은 단순히 담당 관청의 차이보다는 구체적인 수록 내용과 기록 방식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사옹원 편의 구체적인 수록 내용을 통해 그 기록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가례의 주관 관청인 예조에서도 의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을 편찬하였다. 즉 1866년 명성황후 가례는 예조와 사옹원이 각자의 담당 업무에 따라 각각 등록을 편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장서각 소장의 명성황후 『왕비가례등록』의 표지 및 속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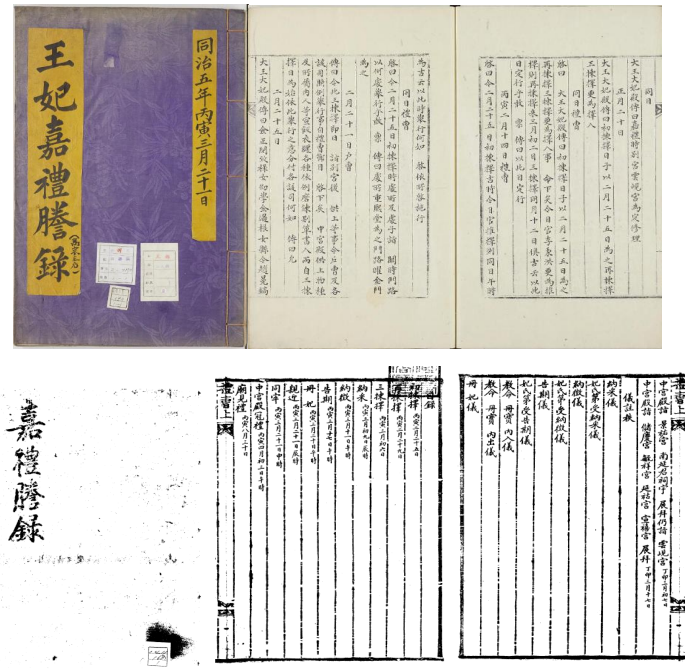

〈그림 1〉 『왕비가례등록』(1866) 사옹원 편(상) / 예조 편(하)

14) 임민혁, 앞의 논문, 2012, 110면.

위의 〈그림 1〉에서 상단의 자료는 사옹원 편으로, 보라색 비단 표지 위에 서명이 '王妃嘉禮謄錄'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에 '同治五年丙寅三月二十一日'로 일자가 기재되었다. 하단의 자료는 上魚尾 위에 '禮曹上'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예조에서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예조 편과 사옹원 편의 편찬과 구성 내용을 비교하면서 각 작성 주체의 의례적·실무적 성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사옹원, 예조 각 편의 책 첫머리의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왕비가례등록』(1866) 사옹원 편 및 예조편 수록 내용 정리

수록 내용	사옹원 편 일시	예조 편 일시
初揀擇	병인 2월 25일 오시(11시-13시)	병인 2월 25일
再揀擇	병인 2월 29일 손시(8시 30분-9시 30분)	병인 2월 29일
三揀擇	병인 3월 초6일 손시	병인 3월 초6일
詣別宮	병인 3월 초6일 신시(15시-17시)	—
納采	병인 3월 초9일 진시(7시-9시)	병인 3월 초9일 진시
納徵	병인 3월 11일 오시	병인 3월 11일 오시
告期	병인 3월 17일 오시	병인 3월 17일 오시
冊妃	병인 3월 20일 오시	병인 3월 20일 오시
親迎	병인 3월 21일 진시	병인 3월 21일 진시
同牢宴	병인 3월 21일 정시 (12시 30분-13시 30분)	병인 3월 21일 신시
大王大妃殿 朝見禮	3월 22일 진시	—
王大妃殿 朝見禮	3월 22일 손시	—
大妃殿朝見禮	3월 22일 정시	—
中宮殿冠禮	—	병인 4월 초3일 오시
廟見禮	—	병인 8월 30일
中宮殿 詣景祐宮 南延君祠宇 展拜 仍詣雲峴宮	—	정묘 3월 초7일
中宮殿 詣儲慶宮 毓祥宮延祜宮 宣禧宮展拜	—	정묘 3월 17일

*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입

위의 〈표 2〉를 보면 1866년 왕비 가례가 삼간택과 납채・납징・고기・책비・친영・동뢰연의 육례 순 등으로 전례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옹원 편은 1866년 3월 22일의 조현례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조 편은 1866년 4월 초3일의 중궁전 관례부터, 1867년 3월 7일에 행해진 경우궁・남연군사우 전배 및 운현궁에 나아가는 예, 1867년 3월 17일 저경궁・육상궁・연호궁・선희궁 전배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위의 〈표 2〉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뢰연 시각이 상이하게 기재되어있는 점이다. 3월 초6일 동뢰연의 일자를 처음 택할 당시에는 신시로 정하였으나[15], 동뢰연 바로 전날인 3월 20일, 거행 시각이 다소 늦다 하여 다시 택일하라는 명에 따라 일관으로 하여금 재차 추택한 결과 정시가 길하다는 예조의 계에 따라 신시에서 정시로 시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동뢰연 거행은 사옹원 편 첫머리에 기록된 정시에 시행한 것이 정확하다.[16]

예조 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1866년 1월 1일 대왕대비의 금혼령 전교부터 1867년 3월 16일 다음 날 저경궁 등의 전배를 위해 출궁할 때의 문로를 협양문으로 하겠다는 전교까지 모두 예조의 계사와 전교의 내용을 일시에 따라 기재하였다. 왕실 사우 전배 및 당시 가례 거행 시 왕비의 임시 거처인 별궁이었던 운현궁으로 나아가는 예 등이 추가된 29개 항목에 달하는 각양의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조에서 작성한 『왕비가례등록』은 예조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체 총 약 142쪽 중 약 60쪽에 걸쳐 29개 항목의 의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예조 편은 왕비 가례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각 의례의 거행 절차 및 격식을 상세히 정리하는 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옹원 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1866년 1월 15일 京單을 완료하고 방외단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6일.
觀象監牒呈內, 今此嘉禮校是時, 六禮吉日時推擇後, 錄牒報爲心爲後, 納宋三月初九日辰時, 納徵同月十一日午時, 告期同月十七日午時, 納妃同月二十日午時, 親迎同月二十一日辰時, 同牢宴同月同日申時. 事據書啓目粘連牒呈是白. 有亦向前六禮吉日時, 依牒呈施行何如. 啓依允.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0일.
書啓辭明日同牢宴時刻稍晩, 更爲擇入事命下矣. 令日官更爲推擇, 則丁時爲吉云. 以此時擧行何如. 傳曰, 允.

자를 접수해 삼간택의 일정을 다음 달 초순부터 그믐까지 그 사이로 택입하라는 대왕대비의 전교부터 3월 22일의 조현례까지 삼간택에서 육례의 내용이 일자별로 정리되어있다. 특히 예조 담당 업무만이 기록되어 있던 예조편과 달리 예조・의정부[17]・호조[18]뿐만 아니라 등록의 작성 주체인 사옹원 업무 내용[19]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옹원의 응행 절목 및 각양 찬품 물종내역, 동뢰연 및 조현례 거행 시 상차림 등 사옹원의 실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해당 내용에서는 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양 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삼미에서의 약과 1器를 만들기 위해서는 眞末 4되, 淸蜜과 汁淸 2되, 眞油와 合油 2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작에 필요한 물종과 용량이다.[20] 이어서 1866년 3월 22일 조현례 거행까지 마친 후 도감 도제조 이하 및 상의원 제조 이하의 별단을 서입하라는 내용과 사옹원 별단, 賞典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예조의 등록에 29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던 것과 달리, 사옹원 편은 사옹원이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동뢰연과 조현례의 의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다음으로는 甘結・移文 등의 내용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사옹원 편의 또 다른 특징은 편미에 수록된 圖說이다. 다음의 〈그림 2〉는 1866년『왕비가례등록』사옹원 편에 수록되어 있는 동뢰연 때의 찬품도 및 배설전도이다.

---

1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왕비가례등록』, 병인 2월 29일.
同日政 嘉禮都監都提調 領議政趙斗淳, 提調三單金炳冀李敦榮李載元, 郎廳六單林冕洙白仁行金獻鎭韓弼教・洪徹謨・姜駿秀. 嘉禮都監提調五單興寅君徐戴淳趙然昌任百秀韓啓源 加差下, 及副提調三單李載冕趙寧夏閔升鎬, 文郎廳三單李明應趙慶鎬申道熙 差下事 承傳.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왕비가례등록』, 병인 2월 21일.
二月二十一日 戶曹: 傳曰, 今此三揀擇卽日詣別宮後, 供上等事令戶曹及各該司照例擧行事, 自禮曹節目啓下矣. 中宮殿供上物種及所屬內人等, 宣飯衣纏各種依例磨鍊別單書入, 而自三揀擇日爲始依此擧行之意, 分付各該司何如. 傳曰, 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10일.
三月初十日本院: 啓曰, 今此嘉禮同牢宴饌品熟設所, 依已例定行於本院, 而本院姑住移接所之意敢啓. 批旨內知道, 移接所卽扈衛廳.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9일.
本院啓目. 藥果一器.【眞末四升, 淸蜜汁淸幷二升, 眞油合油幷二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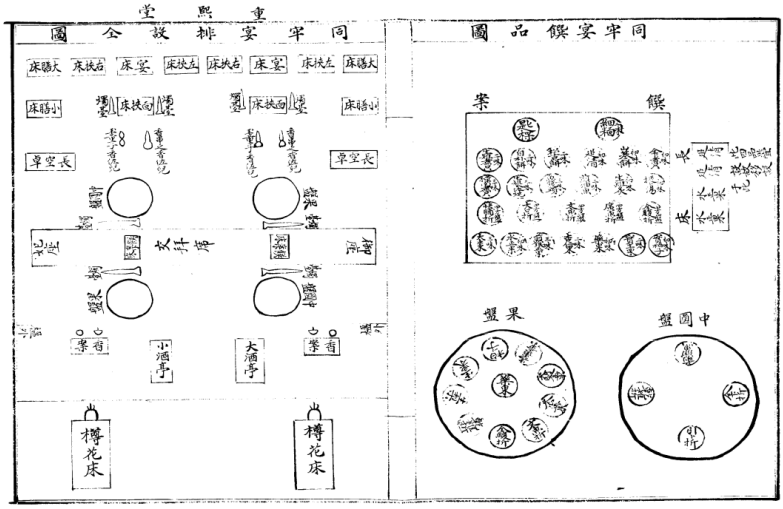

〈그림 2〉『왕비가례등록』(1866) 사옹원 편 내 동뢰연 찬품도 및 배설전도[21]

위의 〈그림 2〉에서 배설전도에서는 교배석에서의 御座와 妃座, 饌案床과 果盤 및 中圓盤, 長空卓, 香串之香佐兒, 玉童子香佐兒 등의 각종 물품이 동뢰연 장소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찬품도를 통해서는 왕과 왕비 앞에 놓이는 찬안상과 중원반, 과반 위에 어떤 음식이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설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례도감의궤』에서는 동뢰연도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 왕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가례에서 기명의 배설 방식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찬품도는 다른 『가례등록』과 『가례도감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866년 『왕비가례등록』만의 특징이다. 찬품도는 당시 사옹원에서 준비한 찬안·중원반·과반의 상차림과 배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찬품도의 수록은 사옹원이 의례 공간에서 담당한 찬품과 기물의 실제 배설 방식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사옹원 편의 실무적 기록 성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21) 조선 왕실 가례 동뢰연 음식상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인, 「조선 왕실 가례의 동뢰연 음식상 구성과 음식 배치」, 『한국학』 47, 2024 참조.

이상 살펴본 사옹원에서 작성한 『왕비가례등록』은 예조·의정부·호조 등의 업무를 함께 수록하면서도, 사옹원이 담당한 찬품의 마련과 상차림 등 실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찬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달과 제조에 필요한 물종과 수량, 담당 인원 및 배설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의례의 절차와 격식보다는 실제 가례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무에 중점을 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성격을 고려하면 1866년 사옹원 편은 새로운 의례 체계의 성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가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옹원이 담당한 실무를 별도로 정리·성책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병인년[1866] 왕비 가례의 절차와 특징

본 장에서는 『왕비가례등록』에 기재된 삼간택·육례·조현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1866년 왕비 가례의 절차를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미혼의 嗣王이 즉위할 경우 대개 선왕의 삼년상을 마친 이후에 가례를 거행하였다. 따라서 고종의 가례도 1866년(고종 3) 2월 6일에 거행되는 철종의 祔廟禮를 앞두고 추진되었다.[22] 고종의 배필인 명성황후 민씨(1851-1895)는 본관이 여흥이며, 僉正 閔致祿(1799-1858)의 딸이다. 여주 근동면 담암리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9살에 민치록이 죽자 어머니와 함께 인현왕후가 살던 안국동 感古堂에서 성장했다.

간택은 1866년 1월 1일 대왕대비전의 금혼령 전교로 시작되었다. 경단을 완료하고 방외단자를 접수하여 초간택·재간택·삼간택 일정을 2월 초순부터 말기까지로 설정했다. 당초 2월 13일, 2월 25일, 3월 2일로 계획되었으나[23], 신정왕후의 하교에 따라 다시 일관 이병흥의 택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2월 25일, 2월 29일, 3월 6일로 확정되었다.[24] 금혼령 전교 이후 1월 15일 신정왕후는 가례 시

22) 김세은, 「1866년 고종의 嘉禮와 대원군의 위상 강화」, 『한국사연구』 136, 2007, 220면.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정월 15일.
禮曹啓曰, 大王大妃殿傳曰, 京單已畢, 捧外方單子隨到隨啓. 初·再·三揀擇日子, 自來月初旬至晦間擇入. 處子入來時衣服, 毋敢踰於紬紵事, 一體分付, 事命下矣. 令日官李秉洪推擇, 則初揀擇來二月十三日, 再揀擇同月二十五日, 三揀擇則二月內無吉日而來三月初二日爲吉云. 以此日定行乎. 敢稟. 傳曰, 以此日爲之.
2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정월 20일.

별궁을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으로 정하고 수리할 것을 하교하였으며[25], 이틀 후인 17일에는 왕비의 본가를 흥인군의 궁으로 하고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26] 이는 왕비의 본가를 별궁 근처로 이주시키는 前例에 따른 것이었다.[27]

초간택은 2월 25일 午時에 중희당에서 거행되었다. 첨정 민치록의 딸, 幼學 金遇根의 딸, 縣令 趙冕鎬의 딸, 徐相祖의 딸, 龍岡縣令 兪初煥의 딸 등 5명이 재간택 대상으로 선발되었다.[28] 김우근은 안동 김씨, 조면호는 풍양 조씨로 당시 세도정치 핵심 가문이었다. 조면호(1803-1887)는 1837년(헌종 3) 식년시 진사과에 급제 후 蔭補하였다. 이후 순창 군수・평양 서윤・의성 현령을 역임하였으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인한 유배 이후 다시 공조 참의・호조참판・지의금부사를 지냈다. 서상조(1830-1905)는 달성 서씨로, 1852년(철종 3)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이며 이후 1882년(고종 19) 증광시 병과로 급제하여 봉상시정・규장각직각・이조참의・이조참판・장례원경 등을 역임하였다. 간택 당시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令이라고 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유초환(1819-1893)은 기계 유씨이며, 1863년(철종 14)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리하자면, 김우근의 딸은 순원왕후 계열, 조면호의 딸은 신정왕후 계열의 유력한 외척 가문의 후보로 간택된 것으로 보인다.

초간택과 동시에 가례도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혼례 준비에 착수했다. 도제조에는 영의정 趙斗淳, 제조에는 興寅君 李最應을 비롯한 11명, 부제조 3명, 문랑청 3명이 차출되어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다. 원래 가례도감을 설치할 때 도제조는 삼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 맡았으며, 제조 3명은 판서급에서 선발하였다. 본 가례에서는 앞서 선발한 兼禮曹判書 金炳冀・兼戶曹判書 李敦榮・工曹判書 李載元 외에 永平君 李昱, 東寧尉 金賢根, 南寧尉 尹宜善, 興仁君 李最應, 行上護軍 徐戴淳, 行

大王大妃殿傳曰, 初揀擇日子以二月二十五日爲之, 再揀擇三揀擇, 更爲擇入.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정월 15일.
大王大妃殿傳曰, 嘉禮時別宮雲峴宮爲定修理.

26) 『승정원일기』 2698책, 고종 3년 1월 17일(정축).

27)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452면.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2월 25일.
大王大妃殿傳曰, 僉正閔致祿女, 幼學金遇根女, 縣令趙冕鎬女, 令徐相祖女, 龍岡縣令兪初煥女, 再揀擇入之, 其餘幷許婚.

上護軍 趙然昌, 行大護軍 任百秀, 行大護軍 韓啓源 등을 제조로 추가 임명하였는데, 이는 인조대 이후 거행된 가례 중 가장 많은 제조 인원수이다.[29]

이러한 제조 구성원 중 겸호조판서 이돈영, 공조판서 이재원, 영평군 이욱 및 흥인군 이최응 등 종친과 동녕위 김현근 및 남녕위 윤의선 등 부마가 제조로 임명된 점이 주목된다. 정리하자면, 이전 가례에서 3명을 제조로 임명하였던 것에 반해 1866년 가례의 제조는 총 1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1명 중 과반수가 넘는 6명이 왕실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인원 증가와 왕실 친인척의 대거 참여 양상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30]

또한 이전 가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副提調와 文郎廳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부제조로는 都承旨 李載冕, 吏曹參議 趙寧夏, 禮曹參議 閔升鎬가 임명되었는데, 이들 역시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재면은 고종의 친형이며, 조녕하는 신정왕후의 조카였고, 민승호는 妃氏의 양형제이다. 문낭청은 副司果 李明應, 申道熙와 고종의 매부인 奎章閣待教 趙慶鎬였다.[31]

재간택은 2월 29일 巽時에 중희당에서 거행되었다. 장소와 절차는 초간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첨정 민치록의 딸만이 삼간택에 진출하게 되었다. 재간택에서 5명의 처자 가운데 민치록의 딸 1명만이 삼간택 대상으로 선발된 것은, 통상 3명 정도를 선발하던 전례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32] 삼간택은 3월 6일 손시에 중희당에서 최종적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시원임대신, 예조 당상관, 종친, 각신, 유신들이 입궐하였다. 대왕대비는 승전색을 통해 빈청에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정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33]

19세기 세도정치는 단순히 특정 권신 개인의 전횡이라기보다, 왕실과 국혼을 맺은 외척 가문이 혼인 관계망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정국 운영에 영향

29)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452면.
30) 김세은, 앞의 논문, 2007, 233면.
31)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452면.
32) 김세은, 앞의 논문, 2007, 223면.
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6일.
大王大妃殿以承傳色傳于賓廳曰, 大婚欲定於僉正閔致祿女, 卿等之意何如. 賓廳啓辭, 領中樞府事臣鄭元容, 領敦寧府事臣金左根, 議政府領議政臣趙斗淳, 行判敦寧府事臣李景在, 議政府左議政臣金炳學, 右議政臣柳厚祚啓曰, 伏承慈敎, 允協神人之望, 斯乃宗社臣民無疆之福. 臣等不勝忭賀之忱. 敢啓. 傳曰, 知道.

력을 행사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순조・헌종・철종대에는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이 왕실 외척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왕비 간택은 이들 가문이 세도가문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였다.[34]

이러한 점에서 1866년 명성황후 간택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위상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초 2월 13일로 정해졌던 초간택일이 신정왕후의 전교에 따라 2월 25일로 연기된 사실 역시 왕비 가문의 선택을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2월 13일 신정왕후가 철렴을 선언하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고, 이후 진행된 간택에서 풍양 조씨가 아닌 여흥 민씨 민치록의 딸이 왕비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기존 세도정치기 국혼의 방식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헌종・철종대 왕비 간택은 수렴청정기 대왕대비의 영향력 아래 안동 김문과 같은 기존 외척 가문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 반면 명성황후의 간택은 안동 김문이나 풍양 조문과 같은 기존 세도가문을 다시 외척으로 삼는 대신, 정치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흥선대원군과 인척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여흥 민씨를 선택한 것이었다.[35]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씨와 같은 여흥 민씨 가문에 속했으며, 여흥부대부인의 남동생 민승호가 민치록의 양자가 됨으로써 명성황후와도 양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간택은 기존 세도가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흥선대원군과 인척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중전 가문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기존 안동 김문・풍양 조문 중심의 세도정치적 기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왕실 외척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34) 임혜련은 19세기 세도정치에서 왕비 배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순조・헌종・철종의 왕비가 모두 안동 김문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왕실과 국혼을 맺은 외척은 봉작과 추증을 받을 뿐 아니라, 국구가 비변사 당상으로 참여하는 등 정국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임혜련, 「19세기 國婚과 安東 金門 家勢」, 『한국사학보』 57, 2014, 245-247면)

35) 권기석이 지적하듯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은 통혼관계망과 문중적 결속을 통해 형성・확대되었으므로, 왕비 가문의 선택은 곧 향후 권력 관계망의 재편과 직결되는 문제였다.(권기석,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의 형성 배경 (상) - 조선후기 집권세력의 통혼관계망 분석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90, 2000, 123-130면; 권기석,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의 형성 배경 (하) - 조선후기 집권세력의 통혼관계망 분석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91, 2001, 163-168면)

으로 이해할 수 있다.[36] 한편 1866년 가례의 간택 전체 과정은 약 10여 일 만에 완료되었다. 인조대 장렬왕후의 가례 이후 삼간택 과정을 살펴보면, 인현왕후와 인원왕후는 약 10여 일, 정순왕후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 반면, 철인왕후는 약 20여 일, 장렬왕후와 효정왕후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1866년의 간택 기간 자체가 전례에 비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초 2월 13일로 예정되었던 초간택이 2월 25일로 연기되면서 재간택·삼간택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이어졌으며, 재간택에서 사실상 단독 후보가 결정되는 등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전례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37] 그럼에도 전통적인 삼간택 의례 절차는 철저히 준수되었다. 각 단계마다 길시 선택, 장소 설정, 의례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관료들의 업무 분담도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삼간택이 완료된 후 즉일로 별궁행이 계획되었다. 3월 1일 예조에서 삼간택으로 비를 정한 후 즉일로 별궁에 나아가는 길시를 신시로 정했다. 이는 간택 완료와 동시에 왕비 후보자가 자신의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별궁행 수행 체계도 사전에 마련되었다. 3월 4일 흥인군, 공조판서 李載元, 도승지 李載冕, 검교직각 閔升鎬가 따로 배진할 것을 지시했다.[38] 이들은 모두 고위 관료로서 별궁행의 격식을 갖추는 역할을 했다.

별궁에 대한 생필품 공급 체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2월 21일 호조에서 삼간택 즉일로 별궁에 나아간 후 공상 등의 일을 호조 및 각 該司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거행하게 했다. 중궁전 공상 물종 및 소속 內人 등의 宣飯·衣纏 각종을 예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사옹원 편 『왕비가례등록』에서는 이러한 별궁의 공상과 관련하여 膳色 서리 全秀崙과 趙命峻을 차정한 사실이 확인된다.[39] 삼간택이 3월 6일 손시에 완료된 후 왕비는 같은 날 신시에 별궁으로 이동하여 약 15일간 머물면서 가례를 준비하였다. 또한 가례가 끝난 뒤 별궁 공상물 담당 서리들이 임술년

36) 이민아, 앞의 논문, 2025, 13-14면.
37) 김세은, 앞의 논문, 2007, 224-225면.
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4일.
傳曰, 三揀擇後詣別宮時, 興寅君工曹判書李載元都承旨李載冕檢校直閣閔升鎬別陪進.
3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1862)의 사례에 따라 시상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사옹원 편의 기록을 통해서는 운현궁이 별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왕비가 별궁에 머무르는 동안 이루어진 공상과 이를 담당한 실무 인력 등 별궁의 구체적인 운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별궁 관련 업무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하여, 별궁 공상물 담당 서리들은 임술년(1862) 사례에 따라 시상 받았고, 운현궁 차지 내관에게는 호피가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40] 이러한 별궁 운영은 간택에서 친영으로 이어지는 가례 과정에서 왕비 후보자의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고, 중궁전으로서의 예우를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육례의 첫 번째 의식인 납채는 국왕의 대리인이 혼인을 청혼하는 절차였다. 납채의 사행에서 정사에는 판돈녕 李景在, 부사에는 광주유수 閔致久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납채뿐만 아니라 납징, 고기, 책비 등 모든 육례 의식에서 동일하게 정사와 부사 역할을 담당했다. 이경재(1800-1873)는 한산 이씨로, 1822년(순조 22)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직각・이조참의・이조참판・평안도관찰사・대사헌・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64년(고종 1) 6월 7일에 판돈녕부사로 낙점되었으며[41], 가례 이후인 1866년 4월 13일에는 영의정으로 단부되었다.[42] 민치구(1795-1874)는 여흥 민씨로, 흥선대원군의 장인이며 고종의 외할아버지이다. 1863년 공조참의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공조판서가 되었다. 1865년 1월 2일 대왕대비의 하교로 광주유수로 제수되었다.[43] 봉교문관으로는 응교 南商龍이 임명되어 납채 시 교문을 받들고 가는 역할을 했다. 남상룡(1834-?)은 의령 남씨로, 1864년 증광시에 합격하여 부교리・교리・예조참판・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865년 9월 4일 부응교에[44], 가례 거행 직전인 1866년 2월 19일 응교에 낙점되었다.[45]

3월 9일의 납채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채 당일 종친문무백관이 조복을

4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41) 『승정원일기』 2678책, 고종 1년 6월 7일(병자).
42) 『승정원일기』 2701책, 고종 3년 4월 13일(신축).
43) 『승정원일기』 2685책, 고종 2년 1월 2일(무술).
44) 『승정원일기』 2694책, 고종 2년 9월 4일(병인).
45) 『승정원일기』 2699책, 고종 3년 2월 19일(기유).

입고 집합하였으며, 왕이 면복을 갖추고 내전에서 나와 어좌에 올랐다. 전교관[좌부승지 남종순]이 어좌 앞으로 나아가 전교할 것을 아뢴 뒤 사자를 향하여 민치록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 납채례를 행할 것을 명하는 교명을 선포하였다. 정사[판돈녕 이경재]는 교서함을 받아 채여에 싣고 세장·고취를 앞세워 사자 이하와 함께 비씨 집으로 향하였다. 비씨 집에서 교명을 전달하고 납채례를 거행한 뒤 주인은 사당에 이를 고하였다. 이후 사자 이하가 인정전으로 돌아와 정사가 교명을 받들어 납채례를 마쳤음을 복명하면서 의식이 완료되었다.[46] 납채는 다른 육례 의식들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삼간택 완료 후 3월 6일 예조에서 친영 길일을 먼저 택정한 후에 납채 등 육례도 분배하여 택일해야 한다고 했다.[47] 이는 납채를 포함한 육례가 친영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음을 의미한다.

납징은 육례의 두 번째 의식으로 혼수를 전달하는 절차였다. 납징의 사행 구성은 납채와 동일했다. 정사에는 판돈녕 이경재, 부사에는 광주유수 민치구가 임명되어 납채에 이어 계속해서 육례의 정사와 부사 역할을 담당했다. 봉교문관으로는 교리 金奎弘과 부사과 李昌鎬가 임명되어 납징 시 교문을 받들고 가는 역할을 했다. 김규홍(1845-?)은 청풍 김씨로, 1864년 증광시에 급제하여 전라도관찰사·형조판서·경기도관찰사·장례원경·귀족원경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864년 10월 24일 부교리로, 11월 1일에는 정언으로 제수되었으며[48], 1865년 3월 10일 교리에 낙점되었다.[49] 가례 이후인 1866년 3월 23일에는 전한에 단부되었다.[50]

3월 11일의 납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징 당일 왕이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인정전에 나아갔다. 전교관이 납징례를 행할 것을 선포하자 사자는 교서함과 속백함을 받아 요여와 채여에 각각 싣고, 승마와 세장·고취의 의장을 갖

---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納采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妃氏第受納采儀.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6일.
禮曹啓曰, 三揀擇今已過行, 親迎吉日先爲擇定, 然後納采等六禮亦當分排擇吉矣. 親迎吉日以何間推擇乎. 敢稟. 傳曰, 今月念間擇入.

48) 『승정원일기』 2682책, 고종 1년 10월 24일(신묘); 『승정원일기』 2683책, 고종 1년 11월 1일(무술).

49) 『승정원일기』 2687책, 고종 2년 3월 10일(을사).

50) 『승정원일기』 2700책. 고종 3년 3월 23일(임오).

추어 비씨 집으로 향하였다. 비씨 집에서는 주인이 사자를 영접하였으며, 사자가 당에 올라 교서를 선포한 뒤 속백과 말을 주인에게 전달하였다. 주인은 전함을 정사에게 전달하고 사배를 올렸으며, 이후 사자 이하가 인정전으로 돌아와 정사가 납징례를 마쳤음을 복명하면서 의식이 완료되었다.[51]

고기는 육례의 세 번째 의식으로 혼례 날짜를 통지하는 절차였다. 고기의 사행 구성은 납채, 납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정사에는 판돈녕 이경재, 부사에는 광주유수 민치구가 임명되어 육례 전체의 정사와 부사 역할을 담당했다. 봉교문관으로는 헌납 李裕承과 종친부 정 李鍾濬이 임명되어 고기 시 교문을 받들고 가는 역할을 했다. 3월 17일 고기 당일 왕이 면복을 갖추고 인정전에 나갔다. 이후 사자 이하가 혼인의 길일이 담긴 교서함을 채여에 싣고 비씨의 집으로 향하는 데 이하 비씨 집에서 고기를 받는 의례, 예를 마친 후 사자 이하가 복명하는 것은 납채 때와 동일하게 하였다.[52] 이유승(1835-?)은 경주 이씨로, 1864년 증광시에 급제하여 이조참판・한성부판윤・장례원경・태의원경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866년 2월 18일 부교리에서 헌납으로 옮겨 제수되었다.[53] 이종준은 1864년 증광시 급제 이후 바로 교리로 제수되었다.[54] 1865년 6월 22일 부사직에 제수되었으며,[55] 이후 1866년 2월 13일 종친부 정으로 제수되었고, 가례 이후인 3월 27일에는 사간으로 제수되었다.[56]

책비는 육례의 네 번째 의식으로 왕비를 책봉하는 절차였다. 정사와 부사는 동일하게 이경재・민치구였으며, 봉교명관으로는 병조정랑 李明應과 부사과 趙定燮이 임명되어 책비 시 교명을 받들고 가는 역할을 했다. 이명응(1827-?)은 전주 이씨로, 흥선대원군의 사촌이다. 1864년 증광시에 급제한 이후, 이조판서・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64년 10월 24일 교리에 단부, 이후 정언 등에 제수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0일에 병조정랑으로 제수되었다.[57] 이후 부응교 등을 거

5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納徵儀; 儀註秩, 妃氏第受納徵儀.
5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告期儀; 『왕비가례등록』(K2-2673) 儀註秩, 妃氏第受告期儀.
53) 『승정원일기』 2699책, 고종 3년 2월 18일(무신).
54) 『승정원일기』 2682책, 고종 1년 10월 24일(신묘).
55) 『승정원일기』 2691책, 고종 2년 6월 22일(을묘).
56) 『승정원일기』 2699책, 고종 3년 2월 13일(계묘); 『승정원일기』 2700책, 고종 3년 3월 27일(병술).

쳤다가 가례가 진행 중이었던 1866년 3월 14일 다시 병조정랑이 되었다.[58] 가례 종료 이후인 3월 25일 형조참의에 제수되었다.[59] 조정섭은 1864년 1월 10일 가주서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검열과 전적을 거쳐 1864년 8월 21일에 부사과로 단부되었다.[60]

책비는 다른 육례와 달리 각종 의물 제작과 관련된 별도의 관직들이 설치되었다. 교명문 제술관에는 좌의정 金炳學이, 교명문 서사관에는 흥인군 이최응이 임명되었다. 김병학(1821-1879)은 안동 김씨로, 1853년(철종 4) 정시에 급제하여 이후 대사성・이조참판・좌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에는 찬집 총재관으로 『大典會通』 편찬에 참여하였다.[61] 흥인군 이최응(1815-1882)는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흥선대원군의 형으로 종친 중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종친부 유사당상에 임명되었고 국장에서 빈전도감의 당상관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 이최응은 고종 즉위 직후 종친부와 종부시 통합을 주장하는 등 흥선대원군과 정치적 뜻을 함께했던 인물이다. 종친부와 종부시 통합 성사 이후 새로운 직제였던 정1품 판종정경이 되어 이후 고종 연간에 경복궁 영건 등 중책을 담당하였다.[62] 옥책문 전문서사관에는 영돈령 金左根, 옥책문 제술관에는 영부사 鄭元容, 금보 전문서사관에는 판돈녕 이경재, 옥책문 서사관에는 상호군 洪鍾應이 각각 임명되어 왕비 책봉에 필요한 교명, 옥책, 금보 등의 제작과 서사를 담당했다. 김좌근(1797-1869)은 안동 김씨로, 순원왕후의 동생이다. 1828년(헌종 4) 정시에 급제하여 부교리・직각・이조참의・공조판서 등을 거쳐 이후 영의정까지 역임한 인물이다.[63] 정원용(1783-1873)은 동

57) 『승정원일기』 2682책, 고종 1년 10월 24일(신묘); 『승정원일기』 2683책, 고종 1년 11월 1일(무술); 『승정원일기』 2683책, 고종 1년 11월 20일(정사).
58) 『승정원일기』 2700책, 고종 3년 3월 14일(계유).
59) 『승정원일기』 2700책, 고종 3년 3월 25일(갑신).
60) 『승정원일기』 2672책, 고종 1년 1월 10일(임자); 『승정원일기』 2678책, 고종 1년 6월 6일(을해); 『승정원일기』 2679책, 고종 1년 7월 28일(병인); 『승정원일기』 2680책, 고종 1년 8월 21일(기축).
61) 『철종실록』 권6, 철종 5년 9월 22일(무자); 『철종실록』 권9, 철종 8년 1월 15일(무진);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3월 3일(무술); 『고종실록』 권4, 고종 4년 5월 18일(경오); 『고종실록』 권2, 고종 2년, 윤5월 19일(임오).
62) 김세은, 앞의 논문, 2007, 230-231면.
63)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4월 25일(병인);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7월 19일(무오); 『헌종

래 정씨로, 1802년(순조 2) 정시에 급제하여 이조참의・대사간・예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1863년 철종 사후 고종 즉위 전까지 대왕대비 신정왕후의 하교에 따라 院相으로 국정을 맡아보았다.[64] 홍종응(1783-?)은 1827년(순조 27) 日次儒生殿講에서 居首하여 곧바로 直赴殿試의 특혜를 입었던 인물로, 대사성・형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65]

3월 20일의 책비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일 왕이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인정전에 나아갔다. 전교관이 책비례를 행할 것을 선포한 뒤 교명함・책함・보수를 차례로 정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사자는 이를 요여와 채여에 각각 싣고 의장을 갖추어 비씨 집으로 향하였다. 비씨 집에 도착한 사자는 교명함・책함・보수를 상전에게 전달하였고, 상전은 이를 받들어 내문 안에 들였다. 왕비는 적의에 수식을 갖추고 수책위에 나아갔으며, 상궁과 상복이 교명・책함・보수를 받들고 왕비의 우측에 도열하였다. 상궁이 교서가 있음을 아뢰자 왕비가 꿇어앉았고, 상궁이 책을 선독한 뒤 왕비는 부복흥사배하였다. 이어 왕비는 교명과 책함, 보수를 차례로 받아 전언과 상기에게 전달하고 다시 사배하였다. 이후 왕비가 좌에 오르자 상궁 이하가 사배하였으며, 상궁이 예가 끝났음을 아뢰자 왕비가 내전으로 들어갔다. 사자 이하가 궁궐로 돌아와 복명하면서 책비례가 마무리되었다.[66]

책비는 왕비 책봉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의식이어서 다른 육례보다 많은 관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교명, 옥책, 금보 등 왕비의 지위를 상징하는 의물들의 제작과 서사에 고위 관료들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납채・납징・고기・책비에 참여한 거안자・집사 이하에게도 각각 兒馬 1필의 포상이 주어졌다.[67]

실록』 권6, 헌종 5년 7월 6일(기해);『헌종실록』 권8, 헌종 7년 1월 8일(갑오);『철종실록』 권5, 철종 4년 2월 25일(경자).

64)『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 3월 29일(신유);『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 윤4월 3일(갑오);『헌종실록』 권6, 헌종 5년 5월 1일(을미);『고종실록』 권1, 고종 즉위년 12월 8일(경진).

65)『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12월 16일(정해);『헌종실록』 권8, 헌종 7년 10월 7일(정해);『철종실록』 권1, 철종 즉위년 7월 20일(을묘);『철종실록』 권12, 철종 11년 1월 15일(경진).

6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왕비가례등록』, 儀註秩, 冊妃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왕비가례등록』, 儀註秩, 妃受冊儀.

6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친영은 왕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로, 왕이 신민에게 배필을 중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의례이다. 왕비는 왕과 함께 종묘사직의 주인이 되므로 왕은 친영을 행하여 고례의 절차를 준수했다.[68] 1866년 친영 일자는 삼간택 직후인 3월 6일에 결정되었다. 예조에서 계하여 친영 길일의 추택 시기를 문의했다. 전교에 따라 이번 달 20일 사이에 택입하게 되었고, 일관 이병홍이 추택한 결과 3월 21일이 길일로 확정되었다.[69]

친영의 거행 장소는 별궁인 운현궁으로 확정되었다. 3월 6일 예조에서 계하여 친영례가 별궁에서 행해질 것이 가례도감에서 이미 품정되었음을 확인했다. 가례에서 命使奉迎 대신 친영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선조대 이후이다. 친영을 시행하게 되면서 또한 새롭게 변경된 것은 별궁으로, 별궁은 삼간택을 거친 妃氏가 궁궐에서 동뢰연을 치르기 전 왕실 예법을 익히고 초례를 준비하는 임시거처였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태평관을 별궁으로 삼았으나, 1681년(숙종 7)에 이르러 친영 때의 별궁은 어의동 별궁으로 정하여 행해졌다. 어의동 별궁은 1851년(철종 2) 철인왕후 가례까지 왕비의 처소로 사용되었다.[70]

운현궁은 국왕의 생부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다. 신정왕후는 고종이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운현궁 확장을 명하였다. 이때 금위영 서편 담장에 경근문과 공근문을 세워 창덕궁과 운현궁의 연결성을 높였다.[71] 운현궁이 1866년 가례의 별궁으로 채택되었는데, 이후 200년 가까이 별궁으로 사용되던 어의동 별궁은 1868년 장마로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복궁 동궁전 계조당 공사에 활용되었다. 국왕 생부 흥선대원군의 사저가 별궁으로서 혼례의 중심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72]

친영과 관련된 다양한 차비들도 임명되었다. 교명, 옥책, 금보 등 각종 의물을 담당하는 차비들의 배치였다. 교명차비 최건상・송희철, 명의습차비 강원기, 옥책

68) 임민혁, 앞의 논문, 2012, 118-119면.
6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6일.
禮曹啓曰, 以親迎吉日何間推擇仰稟草記. 傳曰, 今月念間擇入, 事命下矣. 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三月二十一日爲吉云. 以此日定行乎. 敢稟. 傳曰, 以此日擧行.
70) 이왕무, 「1802년 순조의 嘉禮에 나타난 국왕의 幸行 연구」, 『장서각』 14, 2005, 183-184면.
71) 이민아, 「흥선대원군 집권기 운현궁의 성격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12, 2025, 112면.
72) 이민아, 위의 논문, 15-27면.

차비 김광필·정태화, 금보차비 한형화·권용정, 상전 양중길 등이 각각 담당 의물에 따라 임명되었다.[73]

1866년의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별궁까지의 친영 행차로는 '敦化東挾門 → 敦寧府前路 → 把子廛石橋 → 鄕校洞屛門 → 於義宮前路 → 泥洞屛門前路 → 別宮大門'이다.[74] 행차로에서의 어의궁은 한성부 동부 숭교방에 위치한 어의동 별궁이 아닌 한성부 중부 경행방에 위치하였던 인조의 잠저인 상어의궁을 의미한다.[75] 다음의 〈그림 3〉은 1866년의 가례가 거행된 동선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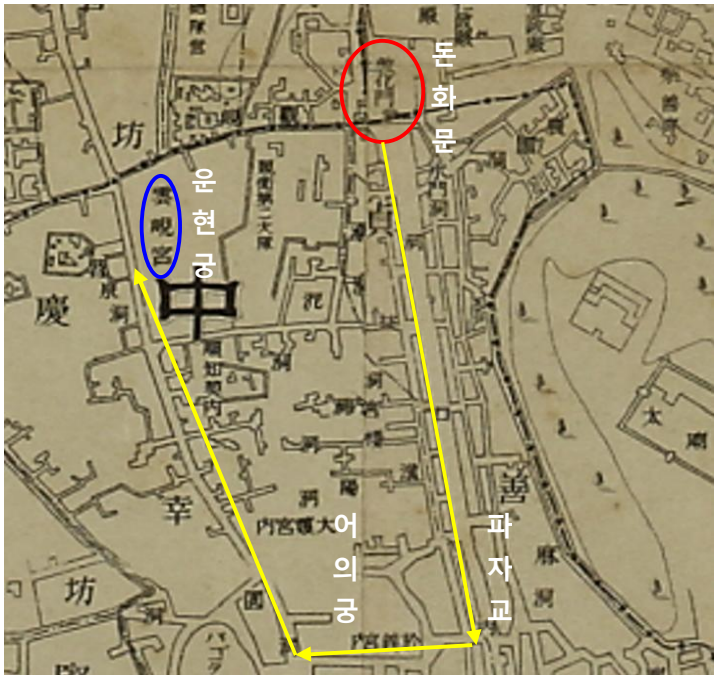

〈그림 3〉 1866년 친영 행차 동선
(『한국경성전도』(1903),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7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7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3153-v.1-2,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 來關.
75) 『輿圖備志』 권1, 京都.
於義宮【仁祖大王潛邸. 孝宗大王誕降于是. 俗稱上於義宮.】 於義洞本宮【孝宗大王潛邸. 自孝宗辛卯以後, 行大王, 王世子嘉禮于此. ○文獻備考云, 龍興宮, 俗稱下於義宮.】

위의 〈그림 3〉을 통해 창덕궁에서부터 운현궁까지의 친영 행차 동선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운현궁이 새로운 별궁으로 정해짐에 따라, 1681년부터 1851년까지 약 170년간 유지되어 오던 창덕궁-어의동 별궁 친영 행차로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가례 시 친영 행차로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가례 시 친영 행차로의 변화

대상	연도	친영 행차로
철종-철인왕후	1851 (철종 2)	敦化門東挾門 → 敦寧府前路 → 把子廛石橋 → 宗廟洞口前路 → 板廛屛門前路 → 蓮池洞石橋 → 於義洞洞口 → 別宮大門
고종-명성황후	1866 (고종 3)	敦化東挾門 → 敦寧府前路 → 把子廛石橋 → 鄕校洞屛門 → 於義宮前路 → 泥洞屛門前路 → 別宮大門
순종-순명효황후	1882 (고종 19)	敦化東挾門 → 宗親府朝房前路 → 把子廛石橋 → 通雲石橋 → 大寺洞屛門 → 園洞屛門前路 → 忠勳府大門前路 → 安國洞前路 → 別宮大門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1851년까지 창덕궁 돈화문에서 파자교를 건너 종묘동 앞길을 거쳐 어의동 별궁으로 이어지던 친영 행차로가, 1866년에는 파자교를 건너 상어의궁 앞길을 거쳐 운현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66년 가례 다음으로 치러진 1882년의 당시 왕세자였던 순종과 순명효황후의 가례에서는, 1880년(고종 17) 고종이 순종의 가례를 위하여 안국동에 안동 별궁을 새로이 조성함에 따라 통운교를 건너 안동 별궁에 이르는 것으로 친영 행차로에 다시 변화가 생겼다. 정리하자면, 1866년의 가례는 별궁이 운현궁으로 변경되면서 의례 공간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친영 행차로 역시 기존의 어의동 별궁 중심 노선에서 상어의궁 앞길을 거쳐 운현궁에 이르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친영 행차로는 현재 확인되는 왕실 가례 가운데 1866년 사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866년의 가례 친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의 생부인 흥선대원군과 생모인 여흥부대부인이 친영 행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순조대 이후 친영 행차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1802년(순조 2) 친영에는 총 1,630여 명과 말 550여 필이, 1851년(철종 2) 친영에는 총 1,940여 명과 말 550여 필이 동원되었다. 1866년 친영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되어 인원 총 2,430여 명과 말 690여 필이 동원되었는데,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의 참여가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76]

3월 21일의 친영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일 왕은 면복을 갖추고 연을 타고 돈화문을 거쳐 출행하였으며, 장축자가 기러기를 들고 수행하였다. 왕이 별궁인 운현궁에 도착하자 주인이 조복을 갖추고 대문 밖에서 영접하였다. 왕은 연에서 내려 여로 갈아타고 대차에 들어갔다가 예례 시각에 맞추어 정청으로 나아갔으며, 왕비도 전모와 상궁의 인도로 나와 정해진 자리에 섰다. 상궁이 기러기를 올리고 전안례를 청하자 왕은 이를 받아 북벽의 안상에 올려놓았으며, 주인은 사배하였다. 이후 왕비가 서계상으로 나아가자 주인은 "조심하고 공경하여 낮이나 밤이나 명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훈계하였으며, 부부인 역시 왕비에게 같은 내용으로 훈계하였다. 왕비가 연에 오르고 왕이 읍례한 뒤, 왕과 왕비가 함께 환궁하면서 친영례가 완료되었다.[77]

친영 시 중궁전 관련 수행 인원도 별도로 구성되었다. 중궁전 승전색 양중길・이민화와 친영시 협시 한재영이 배치되어 왕비의 수행을 담당했다. 친영시 각종 의물을 담당하는 차비들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었다. 보차비 석태원・이원회, 보검차비 이용하・김한영, 계자차비 김규석, 문안 강성호, 담통개 이효원, 수가 김재관・박재건・유태섭 등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임명되었다. 대원군의 위차 행차도 친영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대원군 위차 행차 시 전첨과 봉례가 각각 아마 1필을 사급받았고, 종부 녹사 이하가 별단으로 배행했다. 각 전의 별연시위도 친영을 위해 배치되었다. 대왕대비전 별연시위 최건상, 왕대비전 별연시위 오재선, 대비전 별연시위 김재관이 각각 아마 1필을

76) 김세은, 앞의 논문, 245면.
7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納妃親迎儀.

사급받았다. 친영 관련 인원들에 대한 포상은 역할과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차비들에게는 가자와 호피가, 수행 인원들에게는 아마가 각각 지급되었다. 일부 차비들에게는 숙마가 사급되기도 하였다.78)

동뢰는 3월 21일 정시에 중희당에서 거행되었다.79) 동뢰는 부부가 비로소 일심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의례이다. 왕비가 대차로 입궐하여 중희당 앞에 이르자 상궁의 인도로 내려 대차에 머물렀다. 왕은 규를 잡고 합 안 동쪽에서 왕비를 맞이하였으며, 왕과 왕비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동서로 마주하여 자리에 나아갔다. 이어 상궁이 찬안을 왕과 왕비 앞에 설치하고, 상식이 술잔에 술을 따라 각각 진상하면 왕과 왕비가 함께 제주하고 음복하였다. 이러한 술잔 교환과 음식 나누기를 세 차례 반복한 뒤 왕은 동방으로, 왕비는 유막으로 들어가 각각 면복과 적의를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의식이 마무리되었다.80)

동뢰연의 상차림은 화려하게 준비되었다. 四方盤에는 전복절, 광어절, 대구어절, 문어절, 쾌포절 등이 올려졌다. 中圖盤에는 전복절, 인복절, 건치절, 전유어가, 果盤에는 문어절, 전복절, 건치절, 약과, 생이, 생율, 백자, 생강정과, 동과정과, 천문동정과 등이 준비되었다. 초미에는 추복탕, 전복자기, 생치자기, 산삼병, 추청, 약과, 백자, 수정과 등이 준비되었다. 이미에는 세면, 생치자기, 전유어, 송고병, 추청, 행인과, 생률, 수정과가 준비되었다. 삼미에는 장육자기, 어만두, 생치전체소, 자박병, 추청, 전은정과, 대추, 수정과 등이 각각 준비되었다.81)

그런데 『가례등록』 및 『가례도감의궤』 등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시기에 거행된 가례의 기록이 현전하는 것은 1638년(인조 16) 장렬왕후 가례부터 1906년(광무 10) 순정효황후 가례까지이다. 이 가운데 동뢰연 시 사옹원에

7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7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0일.
啓曰, 明日同牢宴時刻稍晩, 更爲擇入事命下矣. 令日官更爲推擇, 則丁時爲吉云. 以此時擧行何如. 傳曰, 允.
8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儀註秩, 同牢.
81) 동뢰연 상차림의 자세한 품목과 수량은 『왕비가례등록』(K2-2672) 병인 3월 초9일 및 3월 21일자 내용 참조.

서 준비한 찬품의 기수와 동뢰연도가 체계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819년(순조 19) 신정왕후 가례부터이며,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해당 서술 체계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특히 1749년(영조 25) 편찬된 『국혼정례』에서 정립된 동뢰연 찬품의 기본 구성은 19세기 이후의 가례에서도 큰 변동 없이 계승되었으며, 고종대 명성황후 가례에 이르러서도 상수와 기수, 찬품 구성에서 전례와 현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 가례에서는 다른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옹원의 왕비가례등록이 별도로 작성되었다. 등록에 수록된 동뢰연 찬품의 기수는 『가례도감의궤』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새로운 찬품의 증설이나 기수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가례도감의궤』가 각 상의 배설 형식과 찬품의 종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하여, 등록은 각 찬품에 소요되는 재료의 종류와 분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가례도감의궤』에서 초미·이미·삼미를 각각 二床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과 달리, 등록에서는 이를 三味六床으로 총괄한 뒤 각 찬품별 재료와 소요량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처럼 사옹원에서 작성한 등록은 의궤에 나타난 규범적 서술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찬품의 조달과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실무적 성격의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확인되는 사례 가운데 사옹원이 가례를 위해 별도의 등록을 편찬한 것은 명성황후 가례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화된 기록 체계의 변화라기보다는 당시 가례의 시행 과정에서 사옹원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 실무적·보조적 성격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명성황후 가례 등록 사옹원 편은 기존 의궤의 내용을 보완하여 동뢰연 찬품의 실제 조달과 제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례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뢰연 관련 인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동뢰연 찬품 감조관 사옹정 홍종학은 가자, 숙설 감조관 내자봉사 홍재석은 아마 1필이 사급되었다. 또한 동뢰연 찬품 미수과반 차지서리와 각종 실무진들이 배치되었고, 임자년(1852)의 예에 따라 포상받았다.[82]

한편 조현례는 새 왕비가 각 전에 인사드리는 의식이었다. 3월 8일에는

가례 다음 날 중궁전이 대왕대비전에 조현하고, 그 다음 날 왕대비전과 대비전에 조현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였다. 조현례의 구체적인 일시는 3월 9일 일관의 추택에 따라 22일 진시에 대왕대비전, 23일 묘시에 왕대비전, 같은 날 오시에 대비전에 각각 조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83] 그러나 3월 21일 왕대비전과 대비전의 조현례를 하루 앞당기라는 전교에 따라 일관이 길시를 다시 추택하였고, 각각 22일 손시와 정시에 거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84]

조현례 전일에 대왕대비 좌석을 내전 북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안을 전외 좌우에 설치하였다. 당일 왕비가 적의를 갖추고 수식을 가하여 각 전에 나아가고, 전빈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 사배례를 행하였다. 이어 단수반을 받들고 나아가 안에 놓으면 해당 전의 대비가 이를 어루만졌다. 다시 사배한 후 왕비석에 나아가 상식이 잔에 술을 따라 주면 제주하고 음복하는 음복례를 거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복흥사배를 한 후 의식이 마무리되었다.[85]

조현례 시 과반이 준비되었다. 과반 3상에 각 상마다 10기씩 들어갔으며, 문어절, 전복절, 건치절, 약과, 생배, 생율, 백자, 생강정과, 동과정과, 천문동정과 등이 준비되었다. 조현례 시 단수포도 진상되었다. 三殿에 각각 단수포 1조가 사재감에서 진배되었고, 주홍 소소사방반과 홍초 4폭 보자기, 금전지가 도감에서 진배되었다.[86]

조현례는 새로 책봉된 왕비가 궁중의 각 대비전에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 왕비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궁중 위계 질서에 편입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상 삼간택부터 조현례에 이르기까지 『왕비가례등록』에 기록된 내용을 대

8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2일.
8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초9일.
啓曰, 今三月二十二日中宮殿朝見大王大妃殿吉時, 二十三日朝見王大妃殿吉時, 同日朝見大妃殿吉時, 令日官推擇, 則二十二日辰時, 二十三日卯時·午時爲吉云. 以此時擧行何如. 啓依所啓施行.
8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1일.
一 曺啓辭 , 傳曰 , 中宮殿朝見王大妃殿大妃殿 , 進定於明日事 , 命下矣. 吉時令日官推擇 , 則王大妃殿朝見禮巽時 , 大妃殿朝見禮丁時 , 俱吉云. 以此時擧行何. 傳曰 , 允. 事批下敎是置 , 批下內辭意奉審施行爲只爲.
8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朝見禮義.
8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병인 3월 21일.

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4〉는 절차별로 1866년 왕비 가례의 시간, 장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1866년 왕비 가례 절차 내용 정리

절차	일자	시간	장소	내용
初揀擇	2월 25일	오시	중희당	• 5명 선발: 민치록 딸, 김우근 딸, 조면호 딸, 서상조 딸, 유초환 딸 • 그 외는 모두 혀혼
再揀擇	2월 29일	손시	중희당	• 민치록 딸 1명만 선발 • 그 외는 모두 혀혼
三揀擇	3월 6일	손시	중희당	• 민치록 딸을 왕비로 최종 결정 • 대신들 입궐하여 축하
詣別宮	3월 6일	신시	별궁 (운현궁)	• 3차 간택 후 즉일 별궁으로 이동 • 수행자: 흥인군, 이재원, 이재면, 민승호 • 별궁 공상물 공급 시작 • 가례까지 약 15일간 거주
納采	3월 초9일	진시	인정전 비씨제	• 정사: 판돈녕 이경재 • 부사: 광주유수 민치구 • 봉교문관: 응교 남상룡, 부사과 이근수
納徵	3월 11일	오시	인정전 비씨제	• 정사: 판돈녕 이경재 • 부사: 광주유수 민치구 • 봉교문관: 교리 김규홍, 부사과 이창호
告期	3월 17일	오시	비씨제	• 정사: 판돈녕 이경재 • 부사: 광주유수 민치구 • 봉교문관: 헌납 이유승, 종부정 이종준
冊妃	3월 20일	오시	인정전	• 정사: 판돈녕 이경재 • 부사: 광주유수 민치구 • 봉교명관: 병조정랑 이명응, 부사과 조정협 • 교명문・옥책문・금보 관련 관료들 참여
親迎	3월 21일	진시	별궁 (운현궁)	• 왕이 직접 별궁으로 가서 왕비 맞이 • 별배진: 흥인군, 이재원, 이재면, 민승호 • 왕비를 궁궐로 데려옴
同牢	3월 21일	정시	중희당	• 신혼 부부 첫 식사 의식 • 3차례 술잔 교환 후 각자 다른 방으로 이동
大王大妃殿 朝見禮	3월 22일	진시	중희당	• 중궁전이 대왕대비전에 조현 • 적의 착용, 4배례, 단수포 진상, 음복례
王大妃殿 朝見禮	3월 23일	묘시	중희당	• 중궁전이 왕대비전에 조현 • 적의 착용, 4배례, 단수포 진상, 음복례
大妃殿 朝見禮	3월 23일	오시	중희당	• 중궁전이 대비전에 조현 • 적의 착용, 4배례, 단수포 진상, 음복례

4. 맺음말

본고는 1866년(고종 3)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를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66년 가례는 왕조 체제에서 마지막으로 거행된 왕비 가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동시에 예조와 사옹원에서 각각 등록을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편의 등록의 구성과 수록 내용을 비교하고, 삼간택에서 조현례에 이르는 가례의 절차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왕비가례등록』의 편찬과 구성을 살펴본 결과, 예조 편과 사옹원 편은 같은 가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기록의 중점이 서로 달랐다. 예조 편은 삼간택과 육례, 이후의 관례·묘현례·전배례 등에 이르는 의례 절차와 의주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반면 사옹원 편은 삼간택과 육례의 진행을 기록하면서도, 특히 동뢰연과 조현례에서 사옹원이 담당한 찬품 마련, 물종 산정, 상차림 등 실무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따라서 예조 편이 의례의 절차와 격식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면, 사옹원 편은 의례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옹원이 가례를 위해 별도의 등록을 편찬한 사례는 현재 확인되는 왕비 가례등록 가운데 명성황후 가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것을 동뢰연 찬품의 기수 변화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옹원 편에 기록된 동뢰연 찬품의 기수는 『가례도감의궤』와 대체로 일치하며, 새로운 찬품의 증설이나 배설 체계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옹원 편은 각 찬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분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1866년의 사옹원 편은 가례의 의례적 변화 자체를 반영한 기록이라기보다, 기존 전례에 따른 가례 시행 과정에서 사옹원이 담당한 실무 사항을 별도로 정리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1866년 왕비 가례의 절차를 살펴본 결과, 간택 과정에서는 전례와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초간택일이 연기되고, 재간택에서 민치록의 딸만이 삼간택 대상으로 선발된 것은 이전 사례와 다른 양상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세도정치 세력과의 관계, 흥선대원군과 여흥 민씨의 인척 관계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삼간택

이라는 전통적인 절차 자체는 유지되었다.

육례 역시 납채・납징・고기・책비・친영・동뢰연의 순서로 거행되었으며, 각 절차는 전례에 따라 길일과 길시를 택해 진행되었다. 정사와 부사의 임명, 교서와 의물의 전달, 비씨 집에서의 수납 절차, 친영 이후 동뢰연의 거행 등은 조선 왕실 가례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가례도감 제조 인원의 확대, 왕실 친인척의 참여, 별궁으로서 운현궁의 활용 등은 1866년 가례가 고종 초기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현례 또한 가례 이후 새 왕비가 왕실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로서 전례에 따라 거행되었다. 사옹원 편에는 조현례의 상차림과 관련 물종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왕비가 가례를 통해 왕실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옹원이 담당한 실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례가 단순히 국왕과 왕비의 혼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지위를 의례적으로 확정하고 왕실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866년 왕비 가례는 간택과 도감 구성 등에서 고종 초기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의례 절차 자체는 조선 왕실 가례의 전통적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1866년 가례는 정치적 특수성과 의례적 연속성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왕비가례등록』 사옹원 편은 왕실 의례의 거행 과정에서 음식과 상차림을 담당한 관청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기존의 가례도감의궤나 예조 등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의례 운영의 실제를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1866년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예조와 사옹원이라는 서로 다른 관청에서 편찬한 2종 등록의 비교를 통해 서술 주체에 따른 자료 성격 차이의 규명을 시도하였으며, 가례 절차를 세세히 살펴보며 19세기 말까지도 조선 왕실 의례의 전통성이 지속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는 『왕비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육례를 비롯한 가례의 절차와 운영 양상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1866년 가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운현궁의 공간적 의미, 다른 시기 왕실 가례와의 보다 폭넓은 비교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국조오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2, 『왕비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73, 『왕비가례등록』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권오영 외,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박미선, 『조선시대 국혼의례 연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김세은, 「1866년 고종의 嘉禮와 대원군의 위상 강화」, 『한국사연구』 136, 2007.
_____, 「19세기 전반기 국왕의 가례(嘉禮)와 그 특징 -순조대(純祖代)-철종대(哲宗代)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7, 2008.
김해인, 「조선 왕실 가례의 동뢰연 음식상 구성과 음식 배치」, 『한국학』 47, 2024.
박미선, 「조선시대 嘉禮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 144, 2021.
백주연, 「조선 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신병주, 「조선왕실 혼례의 사례와 그 의미」, 『동국사학』 71, 2021.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 - 숙종·인현왕후 嘉禮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 2007.
이민아, 「흥선대원군 집권기 운현궁의 성격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12, 2025.
이범직,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1990.
이왕무, 「1802년 순조의 嘉禮에 나타난 국왕의 幸行 연구」, 『장서각』 14, 2005.
_____, 「1906년 순종의 嘉禮班次 연구」, 『장서각』 25, 2011.
임민혁,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한국사학보』 25, 2012.
_____, 「조선시대 국왕 가례의 절차와 규범」, 『동양고전연구』 47, 2012.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별궁친영례(別宮親迎禮)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한만영, 「中宗代의 親迎論爭과 朝鮮中期 婚禮制度의 變化」, 『역사문화연구』 12, 2000.

【Abstract】

The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of Royal Wedding Rituals in the Early Reign of King Gojong : Focusing on the Wangbi Garye Deungnok of 1866

Jang, Hye-ji*

This study examines the compilation, composition,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wedding of King Gojong and Empress Myeongseong in 1866 (the third year of King Gojong's reign), focusing on the Wangbi Garye Deungnok (Records of the Royal Wedding of the Queen) compiled by the Ministry of Rites (Yejo) and the Saongwon (Office of Royal Cuisine). Among the extant records of royal weddings involving queens, the 1866 Wangbi Garye Deungnok is the only known case in which separate records from both Yejo and the Saongwon have survived, making it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examining how different government offices documented the same royal wedding. By comparing the compilers and contents of the two records, this study identif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version and reconstructs the sequence of the royal wedding from the three-stage selection of the queen (Samgantaek) through the Six Rites and the audience ceremony (Johyeonry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Yejo edition primarily records royal directives, official memorials, ritual procedures, and ceremonial protocols, whereas the Saongwon edition provides detailed accounts of practical affairs, particularly the preparation of food offerings, required ingredients and quantities, and arrangements for the Dongnoeyeon banquet and Johyeonrye. These features suggest that the Saongwon edition served as a practical record that documented the duties undertaken by the office in preparing for and carrying out the established royal wedding rituals. Although the 1866 wedding reflecte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early Gojong period, including the political prominence of Heungseon Daewongun, Queen Dowager Sinjeong's withdrawal from regency, and the use of Unhyeongung as the temporary palace, the overall procedures of Samgantaek, the Six Rites, and Johyeonrye continued to follow established royal

* Ph.D. Candidate, Dept. of History, Kyonggi Univ.

precedents. The 1866 Wangbi Garye Deungnok therefore provides important evidence for both the practical administration of royal weddings by Yejo and the Saongwon and the continuity of royal wedding rituals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Wangbi Garye Deungnok (Records of the Royal Wedding of the Queen), Ministry of Rites (Yejo), Saongwon (Office of Royal Cuisine), Royal Wedding Rituals, Empress Myeongseong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